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38호 2016. 9. 9(금)

공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 - 1126호 숲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보상계획공고..... 1
- 남원시 공고 제 2016 - 1136호 2016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8
- 남원시 공고 제 2016- 1151호 남원시 홍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0
- 남원시 공고 제 2016- 1153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6

회 람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공고 제2016-1126호

숲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보상계획공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숲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9일

남 원 시 장

1. 목적

- 가. 농지이용의 불편함 해결과 안전한 영농을 위하여 숲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정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 나. 숲벌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사 업 시행자
	시군	읍면	리				
숲벌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일원 (권포)	2016. 7월~ 2017. 7월	1,992백만원 정도(공사비, 보상비 등)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개소	남원시

※ 물건(토지 등) 보상시기는 별도(개별) 통보예정이고, 사업내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29번지의 13필지 및 관련 권리 일체와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모두(조서내용의 소유자와 변동 될 수 있음)
- 나.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되며, 남원시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 참여와 알림 - 시정소식 - 남원시 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은 별도로 개별 통지)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6년 09월 09일 ~ 2016년 10월 08(30일간) 09:00~18:00

나. 열람 장소 및 이의 신청방법

-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담당(063-620-6387)
- 열람 후 이의가 있는 물건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단, 평일에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보상시기 : 2016년 9월(개별통보)

- 대상물건을 2개의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하여 보상합니다.

-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통장 계좌 입금

다. 편입물건(사유토지) 내역 : 운봉읍 권포리 29번지의외 13필지(세부내역은 별첨 참조)

7.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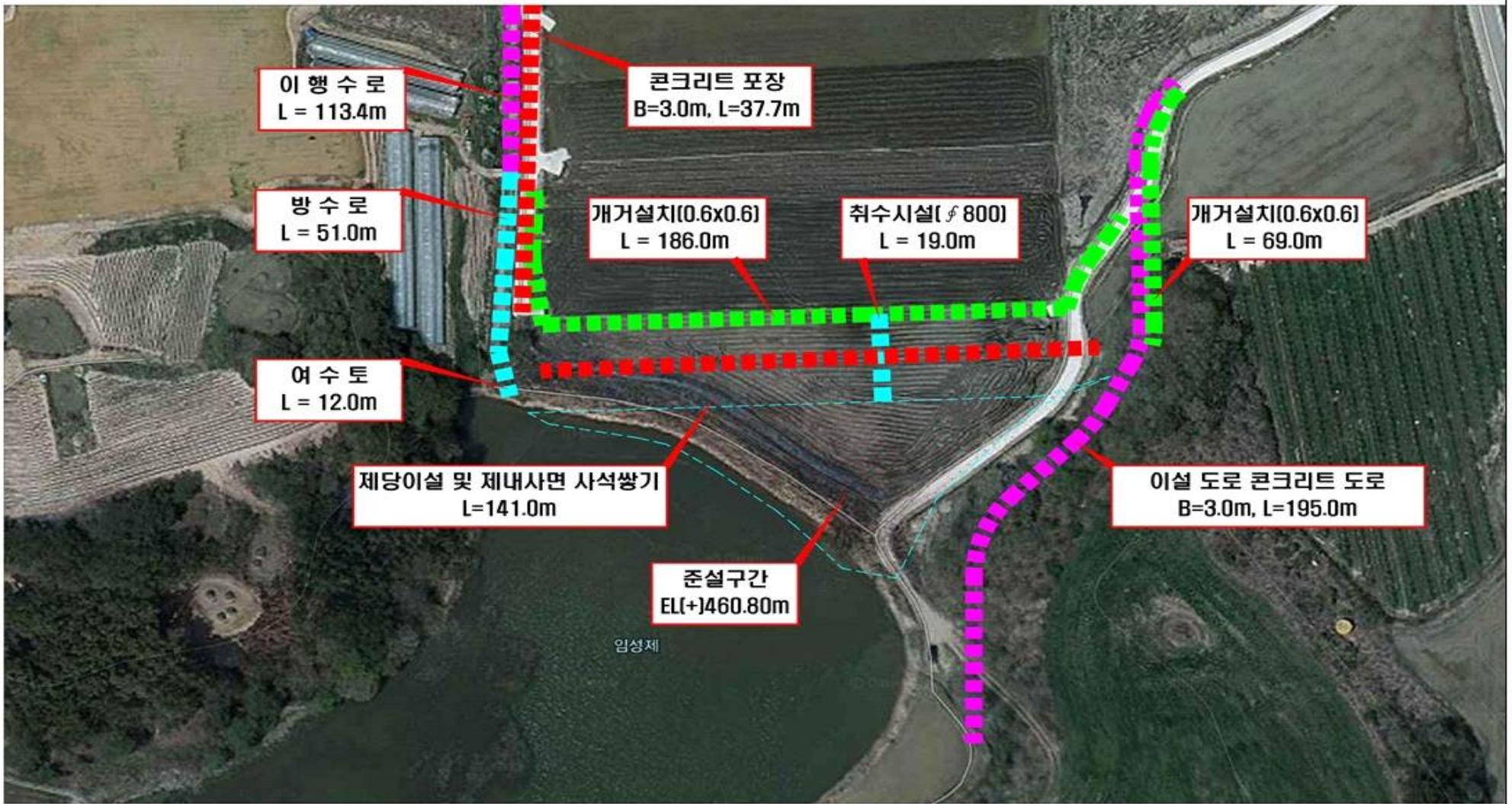
가. 본사업 시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인 및 보상관련 세부 물건조서 열람 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및 구비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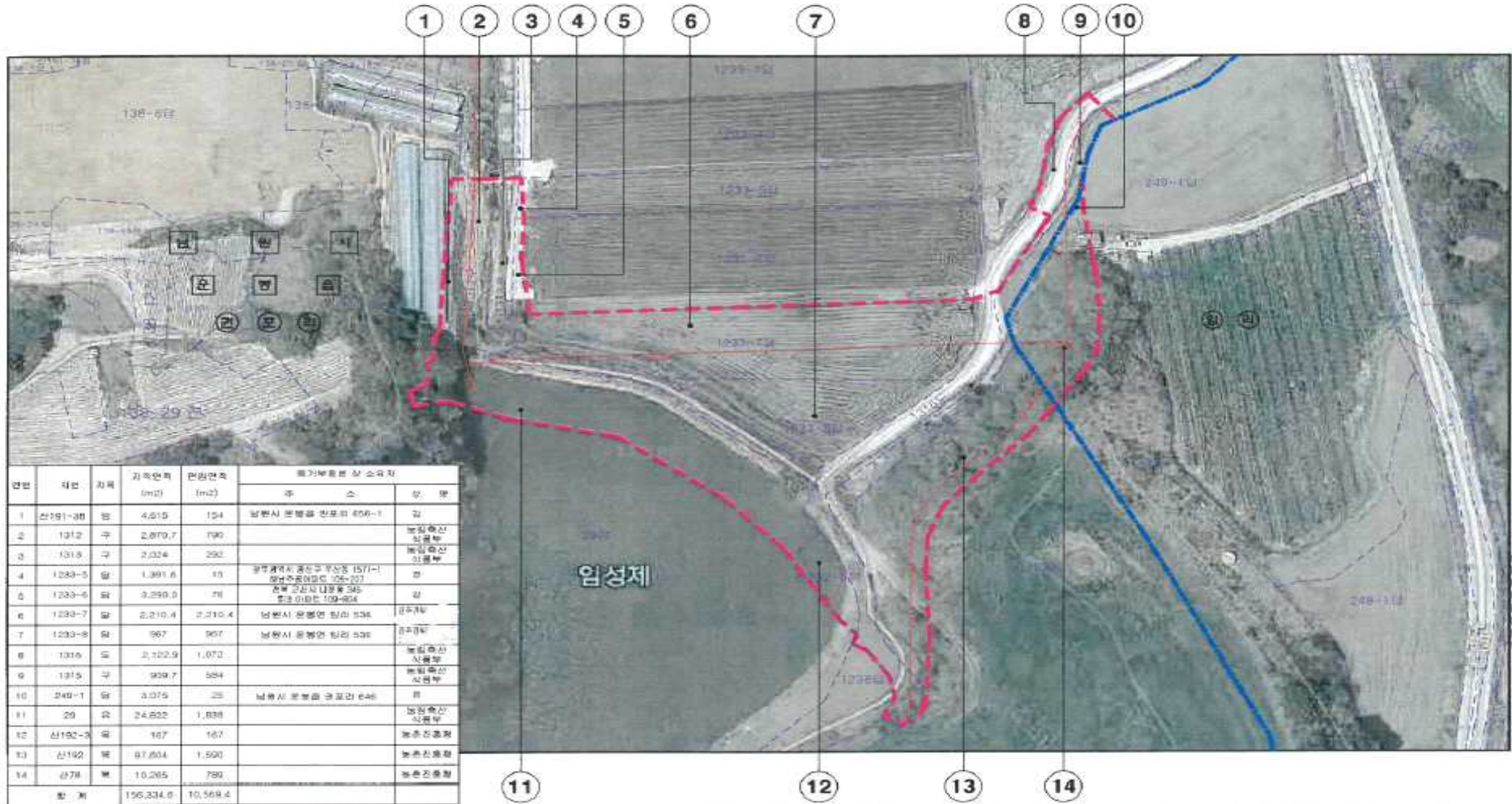
다. 보상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는 현재 확인된 주소로 통지하게 되며, 주소,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서 갈음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담당(주소 :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620-63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숲밀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계획 평면도



용 지 도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면적면적 (m ²)	용기부호별 상 소유자	
					주 소	상 명
1	산191-00	원	4,615	154	남원시 문봉동 경포리 456-1	길
2	1212	구	2,070.7	790		농림축산 식품부
3	1315	구	2,324	292		농림축산 식품부
4	1233-5	밭	1,391.6	55	광주광역시 동구 무성동 1571-1 광주광역시 동구 255-207 전북 고신지 단장동 545 호남 이마트 109-804	방
5	1233-6	밭	3,250.0	76		길
6	1233-7	밭	2,210.4	2,210.4	남원시 문봉면 임리 538	연구개발
7	1233-8	밭	967	967	남원시 문봉면 임리 538	연구개발
8	1316	도	2,122.9	1,073		농림축산 식품부
9	1315	구	939.7	584		농림축산 식품부
10	240-1	밭	3,075	25	남원시 문봉동 경포리 446	방
11	20	유	24,622	1,838		농림축산 식품부
12	산192-3	목	167	167		농촌진흥청
13	산192	목	87,604	1,500		농촌진흥청
14	산78	목	10,265	790		농촌진흥청
합 계			156,234.0	10,569.4		

공 사 명	시 행 명	용 기 회 사	속 력	설 계 일 자	과 직 임 직 자	분 이 별 적 일 자	설 계 가	도 면 명	도 면 번호
숲물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남 원 시 광기산 경계 정맥천 남원	(유)우성기술공사 WOOSUNG ENGINEERING CO. LTD	(A1)-1500 (A3)-11000	2016. 06.				용 지도	59

사업대상부지 용지조서(숲벌제)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용지매수면적(m ²)		토 지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본번	부번		공부상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1	남원	운봉	권포	산191	38	일야	4,615	154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		김**
2	남원	운봉	권포	1312		구거	2,870.7	790			농림축산식품부
3	남원	운봉	권포	1313		구거	2,024.0	292			농림축산식품부
4	남원	운봉	권포	1233	5	답	1,391.6	15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 (하남 주공아파트 *****)		정**
5	남원	운봉	권포	1233	6	답	3,290.3	76	전북 군산시 나운동 345 (롯데아파트 ***동 ***)		강**
6	남원	운봉	권포	1233	7	답	2,210.4	2,210.4	남원시 운봉읍 일리 5**		진주****공파 **면일리대중중
7	남원	운봉	권포	1233	8	답	967.0	967.0	남원시 운봉읍 일리 5**		진주****공파 **면일리대중중
8	남원	운봉	권포	1316		도로	2,122.9	1,072.0			농림축산식품부
9	남원	운봉	권포	1315		구거	909.7	584			농림축산식품부
10	남원	운봉	일리	249	1	답	3,075.0	25.0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6***		유**
11	남원	운봉	권포	29		유지	24,822.0	1,838			농림축산식품부
12	남원	운봉	권포	산192	3	목장용지	167.0	167.0			농촌진흥청
13	남원	운봉	권포	산192		목장용지	97,604.0	1,590.0			농촌진흥청
14	남원	운봉	일리	산78		목장용지	10,265.0	789.0			농촌진흥청
합 계						14	156,334.6	10,569.4			

검 토 의 견 서 (토지소유자)	
제 목	숲벌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관련 검토의견
당사자	토지소유자 성명(명칭)
	주소 (소유토지)
토지소유자 및 주민, 농민 의견	※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후 사업을 추진 하고자함.
기 타	
<p>『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 토 의 견 서 (농민·주민)	
제 목	숲벌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관련 검토의견
당사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15%;">건의자 성명(명칭)</div> <div style="width: 85%;"></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15%;">주 소 (소유토지)</div> <div style="width: 85%;"></div> </div>
토지소유자 및 주민, 농민 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농민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후 사업을 추진 하고자함.</p>
기 타	
<p>『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16.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 style="margin-top: 20px;">남 원 시 장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6-11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6년 0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9. 09

남 원 시 장

- 1. 제 목 : 2016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16. 9. 9 ~ 2016. 9.23.
- 3. 납부기한 : 2016. 9. 30
- 4. 공시송달내용

2016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6년 8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 번호	과 세 번 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권* 구	70****-*****	140001-2016-08-2-***-1497	1,948,090	폐문부재	2016.9.30
홍* 기	761****-*****	140001-2016-08-2-***-1482	344,950	수취인불명	2016.9.30
배* 순	60****-*****	140001-2016-08-2-***-1243	1,173,610	폐문부재	2016.9.30
박* 운	72****-*****	140001-2016-08-2-***-1405	1,048,740	폐문부재	2016.9.30
이* 아	78****-*****	140001-2016-08-2-***-1425	404,380	폐문부재	2016.9.30
강* 인	50****-*****	140001-2016-08-2-***-1374	462,700	폐문부재	2016.9.30
남* 길	76****-*****	140001-2016-08-2-***-1283	29,310	수취인미거주	2016.9.30
차* 호	68****-*****	140001-2016-08-2-***-1289	15,880	수취인미거주	2016.9.30
박* 철	85****-*****	140001-2016-08-2-***-1395	161,370	수취인불명	2016.9.30

남원시 공고 제2016 - 1151호

남원시 홍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원시 홍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남원시 홍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9월 09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과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업무 협약에 따른 입장료, 시설이용료의 할인사항 신설 및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나. 「남원시 홍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홍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세부 할인 규정 삭제 및 신설 (안 제17조)

-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할인 신설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할인)

나. 상위법에 명시된 입장료 면제 조항 삭제 및 신설 (안 제22조)

다. 시설이용요금 개정 (안 별표 4)

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여 용어의 뜻 명확화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가. 휴양림의 이용시간 조정 (안 제2조)

나. 법률 위임 없이 재정보증 보험가입 의무 부과한 규정 삭제 (안 제8조)

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여 용어의 정의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과(☎063-620-64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산 립 과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과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업무 협약에 따른 입장료, 시설이용료의 할인사항 신설 및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세부 할인 규정 삭제 및 신설 (안 제17조)
 -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할인 신설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따른 할인)
- 나. 상위법에 명시된 입장료 면제 조항 삭제 및 신설 (안 제22조)
- 다. 시설이용요금 개정 (안 별표 4)
- 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여 용어의 뜻 명확화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8. . ~ 2016. 9.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시설 사용료”란”을 ““시설 이용료”란”으로, “사용하는”을 “이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16조 중 “휴양림에 대한”을 “휴양림의”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중 “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료는”을 “이용료는”으로, “같으며 별표 4에 없는 시설은 별표 4에 없는 시설의 사용료에 따른다”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비수기에 시설물(숙박시설 포함)을 이용할 경우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할인율은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사용예약은 시설사용료”를 “이용예약은 시설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예정일”을 “이용예정일”로, “사용예정일”을 “이용예정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를“(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휴양림의 입장권 및 시설 이용권은 고정판매소에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료는”을 “이용료는”으로 한다.

제21조 중 “사용요금”을 “이용요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별표 3,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입 장 요 금 표 (제17조 관련)

(단위 : 원/1일)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비 고
개 인	2,000	1,500	1,000	
단 체	1,500	1,000	500	◦ 단체 : 20명 이상

[별표 4]

시 설 이 용 요 금 표 (제17조 관련)

시 설 명	구 분	이용기간	요 금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숲속의 집	3~4인용 (23.76㎡)	1동/1일	60,000원	42,000원	
	5~6인용 (36.54㎡)	1동/1일	80,000원	56,000원	
	10~15인용 (66.05㎡)	1동/1일	150,000원	105,000원	
	15~20인용 (82.85㎡)	1동/1일	200,000원	140,000원	
오토캠프장		1일/1회	30,000원	21,000원	* 전기시설이 포함된 오토캠프장 5,000원 추가 징수
야영장		1일/1회	10,000원	7,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u>시설사용료</u>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시설이용료</u> ----- -----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3조(정의) ----- -----.</p>
<p>1. ~ 7. (생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시설 사용료</u>"란 별표 4의 시설물을 <u>사용하는</u>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8. "<u>시설 이용료</u>"란 ----- ----- <u>이용하는</u> ----- -----.</p>
<p>9. ~ 15. (생략)</p>	<p>9. ~ 15. (현행과 같음)</p>
<p>16. "휴양림 현장책임자"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u>시설사용료</u>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p>	<p>16. ----- ----- ----- ----- <u>시설이용료</u> ----- ----- -----.</p>
<p>17. (생략)</p>	<p>17. (현행과 같음)</p>

제4조(휴양림 관리·운영) (생략)

②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수탁 휴양림의 입장료 등 징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에 없는 시설은 별표 4에 없는 시설의 사용료에 따른다.

②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예외로 하다.

1. 시설물(숙박시설 포함) : 20퍼센트 할인
2. 5일 이상 시설물(숙박시설 포함) 장기 사용시 : 30퍼센

제4조(휴양림 관리·운영) (현행과 같음)

② -----
----- 이용료 -----

-----.

제16조(수탁 휴양림의 입장료 등 징수) -----

----- 이용료-----
-----.

제 4 장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① ----- 이용료는 -----
----- 같다.

② -----

----- 이용료-----

1. 비수기에 시설물(숙박시설 포함)을 이용할 경우

<삭 제>

트 할인

3. 숙박시설물 사용할 때 : 입장료 및 주차료의 50퍼센트 할인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경우 할인 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유치원·초·중·고·대학생들이 20명 이상 단체로 휴양림 이용시 할인기간에는 숙박시설 사용료를 50퍼센트까지 할인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8조(예약 및 해약) ① 시설 사용예약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 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하여

<삭 제>

③ -----
-- 이용료-----

-----.

<삭 제>

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할인율은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18조(예약 및 해약) ① --- 이용예약은 시설이용료-----
-----.

② -----
---- 이용예정일 -----

야 하며, 사용예정일 전전날까
지 한 해약은 예약금 전액을,
전날 한 해약은 예약금의 50퍼
센트를 환불한다.

제19조(입장권의 광고사용)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사
용을 하려는 자와 광고의 내용,
기간, 규격, 사용료 등을 협
의·결정한다.

제20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
수) ①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
설 사용료 징수는 고정판매소에
서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판
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
용료 징수는 관련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
마다 드는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한다.

제21조(요금표 등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요금표를 이용
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 이용예정일 -----

-----.

제19조(입장권의 광고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용료 -----
-----.

제20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
수) ① 휴양림의 입장권 및 시
설 이용권은 고정판매소에서 판
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이용
료 -----

----- 이용료 -----

제21조(요금표 등 게시) -----

와 사용요금 징수 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 3.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4. ~ 8. (생략)

<신설>

② 휴양림과 연결된 지역인 남원시 인월면 거주 주민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입장료 등의 사용)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보완 및 유지관리, 인부사역 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이용요금 -----
-----.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

-----.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4. ~ 8. (현행과 같음)

9.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삭제>

제24조(입장료 등의 사용) -----
----- 이용료 -----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산 림 과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휴양림의 이용시간 조정 (안 제2조)
- 나. 법률 위임 없이 재정보증 보험가입 의무 부과한 규정 삭제 (안 제8조)
- 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여 용어의 정의 명확화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09. . ~ 2016. 09.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을 “시행”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숙박시설 :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4. 야영시설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제2조 제2항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하여”를 “이용하여”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시설사용료는 휴양림관리·운영자”를 “시설이용료는 휴양림관리·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의한 납입서에 의거”를 “따른 납입고지서로”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입장권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 각종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제1항 중 “시설사용권”을 “시설이용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을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를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발매부에 적어야”로,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를 삭제한다.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 이용 및 시설이용 실적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흥부골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흥부골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수납일계표

년 월 일

종 류	구 분		단위	요 금 징 수 내 역			비 고
				수량	단가(원)	금액(원)	
계	합 계						
입장료	소 계						
	어 른	개 인	명				
		단 체	명				
	청소년 군 인	개 인	명				
		단 체	명				
	어린이	개 인	명				
		단 체	명				
	시 설 이용료	소 계					
숲속의집		3~4인용 (23.76㎡)	동				
		5~6인용 (36.54㎡)	동				
		10~15인용 (66.05㎡)	동				
		15~20인용 (82.85㎡)	동				
오 토 캠프장			회				
야영장			회				

흥부골자연휴양림 현장책임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시 설 이 용 권

편 철 부 분	시설이용권 원부	시설이용권	대표적 사진	7cm
	No 홍부골자연휴양림 급 _____ 원 () 년 월 일 운영·관리자명의	No 홍부골자연휴양림 급 _____ 원 () 년 월 일 운영·관리자명의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2.0cm	3.0cm	3.0cm	10.0cm	

(앞면)

시설 위치도	유의사항	편 철 부 분	7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를 줄입니다. - 쓰레기를 되가져 갑니다. - 휴양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합니다. - 산림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 산불을 조심합니다. 		
8.0cm	5.0cm	3.0cm	2.0cm

(뒷면)

※()안에는 조례 별표 4에 의한 시설명을 내용별로 구분 표시할 것
180mm×70mm(아트지80g/m²)

[별지 제6호 서식]

흥부골자연휴양림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 검인부

담당자	관리책임자	결 재

년 월 일

종 류	구 분	매수	일련번호	인계인수 일 자	인계자	인 수 자 (휴양림현장) 책 임 자
계	합 계					
입장권	소 계					
	어 른	개 인				
		단 체				
	청소년 군 인	개 인				
		단 체				
	어린이	개 인				
		단 체				
	시 설 이용권	소 계				
숲속의집		3~4인용 (23.76㎡)				
		5~6인용 (36.54㎡)				
		10~15인용 (66.05㎡)				
		15~20인용 (82.85㎡)				
오토 캠프장						
야영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 서식]

흥부골자연휴양림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 발매부

년 월 일

담당자	관리책임자	결 재

종 류	구 분	매수	일련번호	전 잔	일 량	인수량	발매량	잔 량
계	합 계							
입장권	소 계							
	어 른	개 인						
		단 체						
	청소년 군 인	개 인						
		단 체						
	어린이	개 인						
		단 체						
	시 설 이용권	소 계						
숲속의집		3~4인용 (23.76㎡)						
		5~6인용 (36.54㎡)						
		10~15인용 (66.05㎡)						
		15~20인용 (82.85㎡)						
오 토 캠프장								
야영장								

[별지 제8호 서식]

흥부골자연휴양림 근무일지

현장책임자	관리운영자	결 재

- 년 월 일(요일) 날씨 :
- 근무자 ㄱ 직 :
- ㄴ 성명 :
- 이용인원 및 시설이용 실적

입장자수	시 설 이 용 실 적				
	주차장	숲속의집	오토캠프장	야영장	기타
명	대	동	회	개소	명
(매)	(매)	(매)	(매)	(매)	(매)

※ ()내는 대표수 기재

◦특기사항

※ 주요활동사항·시설보수 및 관리사항·주요인사 방문사항·각종 사건 등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흥부골자연휴양림 이용실적(월)

종 류	구 분		단 위	요 금 징 수 내 역			비 고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계	합 계						
입장권	소 계		명				
	어 른	개 인	"				
		단 체	"				
	청소년 군 인	개 인	"				
		단 체	"				
	어린이	개 인	"				
		단 체	"				
	시 설 이용권	소 계					
숲속의집		3~4인용 (23.76㎡)	동				
		5~6인용 (36.54㎡)	"				
		10~15인용 (66.05㎡)	"				
		15~20인용 (82.85㎡)	"				
오 토 캠프장			회				
야영장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홍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시행</u>----- ----- -----.</p>
<p>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① 휴양림 이용 및 시설 <u>사용시간</u>은 다음과 같다. <u>다만, 시설물을 사용하여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① ----- ----- <u>이용시간</u>----- ----- . <단서 삭제></p>
<p>1. 2. (생략) <신설></p>	<p>1. 2. (현행과 같음) 3. <u>숙박시설 :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3:00까지</u></p>
<p><신설></p>	<p>4. <u>야영시설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u></p>
<p>② 입장권은 매표 당일에 <u>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시설물을 사용하여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② ----- <u>한정하여</u> ----- . ----- <u>이용하여</u> ----- -----.</p>
<p>제3조(입장료 징수) ①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u>시설사용료는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u></p>	<p>제3조(입장료 징수) ① ----- ----- <u>제20조에 따른</u> ----- ----- <u>시설이용료는 휴양림관리·운영자</u>-----.</p>
<p>② 휴양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p>	<p>② ----- -----</p>

시설물의 사용을 연중 예약접수
할 수 있다.

제4조(요금의 수납) 휴양림현장책
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입서에
의거 시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납일계표
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
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계약에 의
한다.

제5조(입장권 등의 서식) 조례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입
장권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 각종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제6조(입장권의 인쇄 및 검인) ①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은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인쇄한다.
②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6호서
식의 검인부에 의하여 휴양림현
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입장

----- 이용-----
-----.

제4조(요금의 수납) -----

시설이용료-----
----- 따른 납입고지서
로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
-----.

따른다.

제5조(입장권 등의 서식) 조례 제
20조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3
호 서식에 따른 개인입장권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단체입
장권으로 구분하며, 각종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
른다.

제6조(입장권의 인쇄 및 검인) ①
----- 시설이용권-----
-----.
② -----
--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6호 서
식-----

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월 1회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휴양림현장책임자는 휴양림 이용 및 시설사용실적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홍부골자연휴양림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보증)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계약에 의한다.

제9조(실적보고)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발매부에 적어야 -----

- 1회 이상 -----.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 이용 및 시설이용 실적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홍부골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실적보고) -----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홍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남원시장 귀하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6 - 1153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춘향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9월 09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춘향제전위원장 위촉에 관한 조항의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품격 있는 춘향제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춘향제전위원장은 시장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인의 추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붙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776 남원시 광한서로 28

남원시 문화관광과(전화 : 063-620-5773, FAX : 063-625-4574)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청 문화관광과 담당자 류영목(전화 : 063-620-57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춘향제전위원장 위촉에 관한 조항의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품격 있는 춘향제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춘향제전위원장은 시장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인의 추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촉 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2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9. 9. ~ 2016. 9. 29.(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선양회”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의”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를 “춘향제 행사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 다만,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u></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1. <u>선양회</u> 회원 및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p> <p>2. 3.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u>위원회</u> 위촉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u>위원</u>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p>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춘향문화선양회장을 포함하여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 <단서 삭제></u></p> <p>③ ----- ----- -----.</p> <p>1. <u>춘향문화선양회(이하"선양회"라 한다)</u> ----- -----</p> <p>2. 3. (현행과 같음)</p> <p>④ ----- -----, ----- <u>위원의</u> ----- ----- -----</p> <p>제7조(회의) ① ----- ----- ----- <u>재적위원</u> ----- -----</p>

②·③ (생략)

제8조(기획위원회) ①·② (생략)

③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과 시설대여 등을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획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7조를 -----.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
준항제 행사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